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서류의 명칭 :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
2. 공 고 기 간 : 2020. 11. 30. ~ 2020. 12. 14.(14일간)
3. 공 고 방 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4. 공시송달대상

연번	대상자	주 소	세 목	반송사유	반송일자
1	이○희	충북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로 6-9 101동 103호(훼미리타운)	자동차세	이사감	2020.11.23.
2	이○진	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2길 8	자동차세	폐문부재	2020.11.27.

5. 공시송달내용

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영동군 재무과 (043-740-3252)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0년 11월 27일

영 동 군

